

신속처리 결과통지서
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	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
	대표자	
신규 기술·서비스	명칭	
신속처리 결과	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	
	※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·절차 등 첨부(관계 법령 포함)	
	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	
그 밖의 안내 사항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